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9131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김묘연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소42179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3.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프로그램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로 E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 한다)¹⁾을 제작하여 F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쇄업, 그래픽디자인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서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라이선스계약서'라 한다).

G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G 소프트웨어는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용도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한 사용 시 정품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용권

(중략)

1.2. 사용자라 함은 개인을 제외한 정부, (중략), 기업, 비영리단체 등 모든 주체, 단체, 기관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G 소프트웨어의 사용 시 반드시 정품(Basic Installation)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1.3. 폰트 소프트웨어(Basic Installation License)의 사용범위는 PDF Embedding용, 문서[도서, 포스터, 팜플렛 등 종이인쇄물] 제작용으로 한정합니다.

1.4.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정책’ 참조)

	구분	TTF	OTF	구성
--	----	-----	-----	----

1) 서체프로그램이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을 의미한다.



Basic Installation License(부가가치세 별도)	H	2,200,000원	2,700,000원	253Type 605종
	I	2,300,000원	2,800,000원	271Type 645종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정책				
분야	용도		비고(부가가치세 별도)	
CI	사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		3,500,000원	
BI	브랜드명, 상품명, 체인 및 프랜차이즈 브랜드명 각종 패 키지디자인 타이틀 등		3,000,000원	
2차 제작물	직접 판매 목적의 이미지 제작 (컨텐츠 상품, 티셔츠 등)		1,000,000원	

다. J은 비영리단체로서 2014년경 피고 회사에 CI 및 티셔츠 등 디자인 제작을 의뢰하였다. J의 직원이 2014. 5. 8. 피고 회사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제목은 "RE: [B] J CI, Application - 1안"이고, 그 내용은 각 시안에 대해 티셔츠나 상품에 쓰일 때 어떨지에 관한 문의로 특히 첫 번째 시안에 대해 "색깔과 모양으로는 글씨체가 딱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번째 시안의 글씨체로 교체했을 때는 어떨까요?"이다. 피고 회사 직원이 2014. 8. 25. J의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제목은 "[B] J CI 수정"이고, 그 내용은 "J CI 수정된 시안 전달 드립니다. 1차에서 선택해주셨던 로고 크기나 아이콘의 변경이 있었습니다."이며, 머그컵과 티셔츠의 최소 주문 수량 및 견적이 안내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 30. J이 공식 홈페이지에 사용한 로고(이하 '이 사건 로고'라 한다)의 지정 서체가 K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영문명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로고는 피고 회사 직원이 J 직원에게 여러 디자인 시안 중 하나로 보낸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에서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의 피용자가 이 사건 로고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 2항에 따른 사용자나 대리감독자로서 또는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책임을 지거나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라이선스 계약내용 중 기본 설치비용(Basic Installation License)은 H의 경우 TTF 2,200,000원, OTF 2,700,000원, I의 경우 TTF 2,300,000원, OTF 2,800,000원인데 이 사건의 경우 TTF와 OTF가 불분명하므로 평균값인 2,500,000원 $[(2,200,000원 + 2,700,000원 + 2,300,000원 + 2,800,000원) \div 4]$ 이고, BI(Brand Identity) 제작용 라이선스 비용 3,000,000원이므로 합계 5,500,000원이 원고의 손해액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회사는 최종적으로는 티셔츠만 제작하고 티셔츠 제작비용만 받아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무상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아니다. 또한 해당 티셔츠에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로고는 여러 디자인 시안 중에서 J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 직원이 J에게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파일 자체를 전송, 배포한 것은 아니므



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 14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 직원의 사용자도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여부

가.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로고를 제작하여 J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J 직원과 피고 회사 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티셔츠 제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CI 시안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그 CI 시안 중 이 사건 로고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로고를 J이 공식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로고를 제작하고 이를 J에게 제공한 것은 피고 회사 직원이므로 이 사건 로고를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무상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로고 제작 및 제공 행위 자체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회사는 인쇄업, 그래픽디자인 등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티셔츠 제작에 앞서 이 사건 로고를 제작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서체프로그램 중 무상사용이 가능한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알지 못하였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라이선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서체 소프트웨어는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상업적 용도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한 사용 시 정품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로서 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고, 폰트 소프트웨어 기본 설치 라이선스의 사용범위는 문서 제작 등이며 로고 제작을 위한 CI, 브랜드명 제작을 위한 BI, 티셔츠 등의 2차 제작물 등은 각 별도의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가 필요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비영리단체인 J 또는 회사인 피고 회사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에 해당하며, 티셔츠 제작비용을 받고 티셔츠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로고를 제공한 이상 이후 티셔츠에 사용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 로고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비상업적 용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로고를 제작하고 J에게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무상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나. 피고 C, D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용자를 지휘, 감독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라는 회사기관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며, 위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에서 위 회사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248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직원들의 사용자는 피고 회사이고, 피고 C, D가 피고 회사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대표이사



의 자격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독립된 별개의 지위에서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직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D에게 민법 제756조 제1, 2항에 따른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에게 피고 회사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직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법위반죄를 범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지 법인의 대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 C, D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상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라이선스계약서의 위 기본 설치비용, BI 제작용 라이선스는 수백 개 이상의 폰트에 대한 이용계약이며 이는 당해 서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개별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로고 제작용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국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I 제작용 라이선스를 3,00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용한 범위는 위 라이선스에 포함된 수백 개 이상의 폰트 중 하나의 폰트로 몇 글자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로고는 비영리단체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J로부터 받은 티셔츠 제작비용 이외에 달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회사는 티셔츠 제작 목적으로 이 사건 로고를 제공하였으나 티셔츠 제작



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이후 J이 홈페이지에 이를 사용한 점과 그밖에 피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행위 내용과 침해 기간,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를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로고를 J에게 제공한 2014. 8.경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8. 2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 D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4

재판장 판사 조규설

 판사 신신호

 판사 오덕식